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기사에 제시된 사실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자 판결(2004나84063)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05년 10월 18일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조선일보사는 원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 7. 28. 자 A27면 『현대차 노조의 ‘자해 행위’』 제하의 사실(이하 제1기사)과 2003. 8. 1. 자 A27면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 제하의 사실(이하 제2기사)은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구성된 원고가 경영권에 간섭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운 투쟁을 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바, 위 각 기사의 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2003. 8. 7. 자 A1면 하단 『현대차 새 휴일 수, 미·일 추월』 제하의 기사(이하 제3기사)와 2003. 8. 7. 자 A4면 하단 『현대차 1인 연1,000만 원 올라 평균연

봉 5,000만 원 넘어서』 제하의 기사(이하 제4기사)에서 피고는 휴일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토·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2002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나, 위 각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2003. 8. 8. 자 A26면 하단 『만물상』(이하 제5기사)은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휴가일수가 늘어났으나 이로써 그들의 생산성이나 근로의욕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위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2003. 8. 8. 자 A27면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 제하의 사실(이하 제6기사)과 2003. 8. 9. 자 A27면 상단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 제하의 기사(이하 제7기사)는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면서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위 기사의 내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해의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1, 2기사 및 제6, 7기사의 보도에 따라 각 그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제3, 4, 5기사에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결론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의 각 기사의 위법성 존재 여부에 대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이고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인바,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업계 1위인 회사로서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 중 80% 정도를 조합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직장 노동조합으로서,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과 관련한 쟁의행위 등 원고의 활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한 제1, 2기사와 제6, 7기사에 대해서는 "신문사인 피고가 원고의 쟁의행위에 대한 당부를 평가하고 그것이 다른 기업의 노사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

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제1, 2기사에서의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각 사실은 모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각 그 기사에서의 의견 표명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으나 "제6, 7기사의 경우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후에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연 165일 내지 177일간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조선일보사가 2003년 7월 28일자 『현대차 노조의 자해행위』 제하의 사실 및 8월 1일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 제하의 기사 등 총 7건의 기사에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연간 휴가·휴일일수가 165~177일이며 평균 5,000만 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고 있고 이러한 고임금 구조가 자동차 가격 상승, 협력업체 납품가 하락 및 도산, 국제 경쟁력 하락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이 아닌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1심 판결문은 『언론중재』 2005년 봄호, 136 ~ 145면 참조).

## 판 결 문

사 건 : 2004나8406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노동조합

(설립신고된 명칭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울산 북구 양정동 700

대표자 위원장 이 현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동 우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3. 선고

2003가합66450 판결

변 론 종 결 : 2005. 9. 20.

판 결 선 고 : 2005. 10. 18.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2005.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  
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  
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 을 제5, 6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  
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2003  
년 7월경에는 약 39,000명의 조합원과 90명 정도의  
전임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는 일간신문인 조선  
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2) 현대자동차는 종업원 5만여 명을 거느리고 승  
용차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시장점유율, 수출  
액 등에 있어 국내 자동차 업계의 1위 기업이다.

나.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

(1)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2002년도 단체협약  
이 2003. 3. 31.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양측  
사이에 2003년도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원고  
는 2003. 6.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조정이 조정기간인 10일이 지나도록 종료되지 않  
음에 따라 2003. 6. 24.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4.8%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찬성을 얻은 다음 2003.  
6. 25.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원고가 약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부분파업을 실  
시하였으나 2003년 7월 말경까지도 단체협약이 체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여름휴가마저 겹쳐 업  
무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2003. 7. 30.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이  
후에도 며칠간 부분파업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2003.  
8. 5.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잠정적인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  
가 최종적인 2003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되었다.

(2) 합의 내용(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내용을 추  
가하거나, 기존 협약과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다)

(가) 임금에 관련된 내용

기본급을 98,000원 인상하고, 2003년 경영목표 성과금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을, 2003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으로 통상임금의 100% 상당액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으로 1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다만 2002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2002년에도 경영목표 성과금 등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과 150만 원이 각 지급되었으므로, 위 각 금원이 그대로 모두 임금상승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 근로시간에 관련된 내용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 근무제이다)는 2003. 9. 1. 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개정 즉시 시행한다.

(다) 경영참여에 관련된 내용

현대자동차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 중인 정규인력의 정년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58세까지 보장하고 국내의 경기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원고와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으며,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거나 판매가 부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고, 외주처리·하도급 및 용역전환으로 인한 축소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에게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며,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시장에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1) 피고는 원고의 쟁의행위가 계속 중이던 2003. 7. 28.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현대차 노조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논설(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고, 다시 2003. 8. 1. 조선

일보 A27면 사설란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논설(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2)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2003. 8. 5. 위와 같은 잠정합의가 성립되자, 피고는 2003. 8. 7. 조선일보 A1면 하단에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훨씬 추월/남 165일·여 177일”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3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조선일보 A4면 하단에 “현대차 1인 연 1,000만 원 올라, 평균연봉 5,000만원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별지 4-1 기재와 같은 기사(위 기사에는 구체적인 상승 내역을 나타낸 별지 4-2 표가 그려져 있다, 이하 위 표를 합하여 ‘제4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3) 피고는 다음날인 2003. 8. 8. 조선일보 A26면 하단 ‘만물상’란에 별지 5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5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별지 6 기재와 같은 논설(이하 ‘제6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으며, 다음날인 2003. 8. 9. 조선일보 A27면 ‘오피니언’란에 그 소속 이준 산업부장이 쓴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의 별지 7 기재와 같은 의견 기사(이하 ‘제7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

으면 족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2)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3214 판결 등 참조).

(3)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

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등 참조).

(4)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

#### (1) 제1, 2기사

제1, 2기사는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전의 기사로, 피고는 위 각 기사에서 원고의 투쟁방향이나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이미 지급받고 있는 임금수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고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원고의 투쟁방향에 관한 부분

피고는 제1기사에서 「원고가 현대자동차에게 해외 투자에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면서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경영권에 간섭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운 투쟁은 비합법적일 뿐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없애는 '자해행위'라고 평가한 데 이어, 「원고의 전임자 숫자가 1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원고가 임금협상보다도 주 5일제나 비정규직 같은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나) 과거의 임금수준에 관한 부분

피고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 전부터도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제1기사에서 「현대자동차의 14년 근속 생산직의 평균임금이 연 5,400만 원(제2기사에서는 같은 금액을 '생산직 직원의 평균 연봉'이라고 하였다)」이라고 하고, 제2기사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증가되는 비용을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납품가를 5~10%씩 내리도록 함으로써 보전하여 왔다」고 하여 사실을 적시한 다음, 고임금을 받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고 하면서 이는 실업자들의 새 일자리를 가로채는 행위라거나 그로써 고임금을 쟁취하는 대가를 그들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대신 치르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 (2) 제3, 4기사

제3, 4기사는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직후의 기사로, 피고는 위 각 기사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임금인상 등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 (가)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된 부분

피고는 제3기사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한 휴일의 수 증가에 관하여, 「원고와 현대자동차가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휴일·휴가일수가 남자 165일, 여자 177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수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 휴일의 수는 '토·일요일 휴무 104일, 법정 공휴일 17일, 월차 휴가 12일, 연차 휴가 평균 21일, 신정·추석·하기 휴가 등 약정 휴가 11일을 합산한 것(여직원용은 월 1일씩 연간 12일의 생리휴가를 추가 합산)'으로, 피고는 위 설명에서도 토·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 (나) 임금인상에 관련된 부분

피고는 제4기사에서 임금인상에 관하여, 「현대자동차와 원고 사이의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로 직원들의 1인당 평균연봉이 5,0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 증가액이 약 1,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가액수인 1,000만 원의 내역을 '기본급 연간 약 120만 원(98,000원×12개월), 성과급 400만 원(통상임금 200만 원의 200%),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300만 원(통상임금 200만 원의 100%와 현금 100만 원),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증가되는 휴일근무에 따른 특근수당 약 180만 원'으로 설명하고 있다(한편 피고는 위 기사 말미에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일반직·생산직·영업직 등 전체 직원 평균연봉이 4,600만 원 수준」이라고 기재하여 두어 단체협약 타결 이전의 제1, 2기사의 보도에서 14년 근속 생산직의 평균임금이 5,400만 원이라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위 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2002년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급 등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과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로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는 위 기사에서 이러한 사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 (3) 제5기사

피고는 제5기사에서 「원고와 현대자동차가 주 5일 근무에 합의하면서 1년에 남자 근로자는 165일, 여자 근로자는 177일까지 휴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충분히 놀면서 충분히 월급을 받는 지상천국을 우리 근로자라고 누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세계 자동차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능력을 갖췄는지 현대자동차 노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거나 스웨덴의 예를 들면서 근로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근로의욕도 높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4) 제6, 7기사

피고는 제6기사에서,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라는 제목 아래 「노사협상 결과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165~177일로 늘어났다. 쉽게 말해 하루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이다. 평균 연봉도 5,000만 원을 넘어서다」라고 단체협약에 따른 휴일의 수 증가와 임금인상에 관하여 함께 언급하여 사실을 적시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협상을 ‘질편한 잔칫상’에 비유하면서 이는 소비자들과 하도급 업체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는 한편, 노동계가 그 전철을 밟아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밀어붙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렁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노조에 대한 기업의 대항권 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제7기사에서는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 아래 ‘사측의 파격적인 양보로 임단협을 끝낸 현대자동차’라면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지위를 ‘공무원을 능가하는 철밥통’으로 비유하고 「연간 170~180일의 휴일에 평균 5,000만 원에 이르는 연봉, 게다가 정규직은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라고 정년보장까지 함께 언급하여 사실을 적시한 다음,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근로복지재단’이라고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이 누리는 고임금과 많은 휴일로 인한 비용증가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결국 자동차 가격을 울

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부품 납품가격을 깎아 협력업체에게 돌리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제7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현대자동차를 비판하는 것이지만 기사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기사에서 사실로 적시된 휴일의 수와 임금수준에 관하여 보면, ① 휴일의 수와 연봉액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그에 관하여 ‘질편한 잔칫상’ 또는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현대근로복지재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적시된 사실은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 (5)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

(가) 제1, 2기사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구성된 원고가 경영권에 간섭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운 투쟁을 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바, 위 각 기사의 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제3, 4기사는 주 5일 근무제와 임금인상 등 2003년도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각 기사에서 휴일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토·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2002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나, 위 각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5기사는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휴가일수가 늘어났으나 이로써 그들의 생산성이나 근로의욕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위 기

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6, 7기사는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면서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위 기사의 내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해의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제1, 2기사 및 제6, 7기사의 보도에 따라 각 그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제3, 4, 5기사에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법성의 존재 여부

앞서 2의 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이고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인바,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업계 1위인 회사로서 고용, 수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 중 80% 정도를 조합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직장 노동조합으로서,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과 관련한 쟁의행위 등 원고의 활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1, 2기사 및 제6, 7기사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익성

위 각 기사는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을 목표로 한 원고의 부분파업이 막바지에 이른 2003. 7. 28.부터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3. 8. 9.까지 사이에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는바, 신문사인 피고가 원고의 쟁의행위에 대한 당부를 평가하고 그것이 다른 기업의 노사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가) 제1, 2기사

위 각 기사에서 피고가 그 의견 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은 ① 원고가 현대자동차에게 해외투자에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면서 장기간 파업을 한다는 사실, ② 원고의 전임자 숫자가 100명에 달한다는 사실, ③ 현대자동차 14년 근속 생산직의 평균임금(또는 생산직 직원의 평균 연봉)이 연 5,400만 원이라는 사실, ④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증가되는 비용을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납품가를 5~10%씩 내리도록 함으로써 보전하여 왔다는 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위 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2003년도 단체협약의 내용 및 원고의 전임자 수에 비추어 위 ①, ②의 각 사실은 그 중요 부분이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다른 신문들이 2003년 8월 초경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에 관하여 보도한 기사에 대하여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2003. 10. 20.경 위 각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와 반론보도를 합의함에 있어 “현대자동차의 14년(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이다) 근속 생산직의 평균적인 연봉은 4,288만 원이

고, 위와 같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평일 10시간 근무 외에 휴일 근무까지 하여 실제 휴일 수가 63일에 불과하며, 연 5,400만 원은 위 연봉에 복리후생비, 퇴직금 적립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이다”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현대자동차 14년 근속 생산직 근로자의 실제 휴일 수가 63일에 불과하고 연 5,400만 원은 인건비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시한 위 ③의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를 이원화하여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협력업체들 스스로 납품가를 낮추게 하는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것이 기사의 내용대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구로 증가된 비용을 다시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피고로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로 적시된 위 ④의 사실도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제1, 2기사에서의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각 사실은 모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각 그 기사에서의 의견 표명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나) 제6, 7기사

위 각 기사에서 피고가 그 의견 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은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3, 갑 제12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년도 단체협약이 타결되기 전인 2003년 2월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직원들(부장 이하)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월 3,224,394원이고, 생산직 근로자(25,338명으로, 그 중 95% 정도가 시급제이다)의 평균 근속연수인 14.1년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월 3,346,628원(하루 10시간씩 1년 중 약 300일 동안 근무함을 전제로 하여, ① 기본급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월할 상여금을 합한 월 2,250,786원에다가 ② 평일연장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심야근로수당, 기타 변동수당, 연월차수당을 합한 금액이다)인 사실, 2003년도 단체협약이 타결된 후 평균 근속연수인 14.4년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기본급에 평일 연장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심야근로수당, 기타 변동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합하면 연 4,288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 성과금과 격려금을 더하면 연 4,827만 원 정도인데, 위와 같은 임금을 얻기 위한 근무시간은 평일 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특근 4회(각 10시간 근무)에 의하여 '1년 중 302일 동안 하루 10시간씩'으로 연간 휴일 수는 63일(= 365일-302일)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후에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연 165일 내지 177일간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 (3) 소결론

그렇다면 제6, 7기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나, 제1, 2기사는 그 사실 적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는 제6, 7기사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기사의 보도 경위, 그 적시 내용과 표현방법, 조선일보의 영향력,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다른 언론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가 그 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3.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십 판결 선고일인 2005.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박 인 식  
판사 김 경 호



판결 2

보도 내용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 및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일 경우,  
지엽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8. 자 판결(2004가단256802)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83단독 재판부(판사 염원섭)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직 조사관 출신 김○○

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조선일보사,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피고 신문

사의 2004. 7. 16자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전 국방 등 수십 명 조사』 제하의 기사, 2004. 7. 17자 ‘김대중 칼럼’의 큰 제목 『국가의 틀을 바꾼다?』와 소제목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등과 피고 박근혜의 2004. 7. 19 전당대회 발언, 2004. 8. 3 기자간담회 발언 등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안기부 프락치의 양심선언에 의해 원고의 반국가단체 활동이 조작됐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고 또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원고를 간첩이라 표현하고 조사관인 원고를 위원회 위원이라고 지칭했으며 예비역 장성을 관련법령의 절차에 의거하여 조사하였을 뿐임에도 군 장성과 현역 사령관을 조사하였다고 하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들이 간첩이라 칭하는 대상이 원고를 특정한 것임은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기사와 칼럼의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전체 내용과 취지, 기사와 칼럼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각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그 대상이 공적기관인 의문사위의 구성과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기사와 칼럼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기사와 칼럼이 특정인, 즉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피고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 박근혜에 대해서도 “정치인이 공식적인 논평이나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러한 표현은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이와 같은 정

치적 주장을 대부분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치인의 정치적 언급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각 발언의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그 표현이 공적기관인 의문사위의 구성과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령 피고 박근혜가 위 각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부차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각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판 결 문

사 건 : 2004가단256802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 승 교

Ⅲ 고 : 1. 박 근 혜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4 (한나라당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봉 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 영 화

2.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3. 김 대 중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피고 2, 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변 론 종 결 : 2005. 12. 21.

판 결 선 고 : 2006. 1. 18.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원고에게 피고 박근혜는 5,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김대중은 각자 4,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값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구성원 곽○○ 등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93고합2199호 국가보안법위반)되어 1994. 2. 28.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4노914)에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형을 복역한 후인 1999. 2.경 사면 복권되었으며, 2003. 7.경 계약기간을 2003. 7. 23.경부터 2004. 7. 31.까지로 하여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라 한다) 조사관으로 채용되어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

다. 원고가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4. 7. 16.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조선일보에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전 국방 등 수십 명 조사』라는 제목 하에 “간첩죄로 4년간 복역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K씨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출신 9명(예비역)을 소환조사하고”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라. 그리고 피고 김대중은 다음날인 2004. 7. 17.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 『‘국가의 틀’을 바꾼다?』라는 제목과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내용의 중간제목 하에 “그러나 그가 말한 ‘나라의 틀 바꾸기’가 간첩을 의문사위원으로 만들어 거꾸로 간첩 잡는 책임자들을 조사하게 하는 상황과 오버랩 될 때 우리는 큰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다.

마. 한나라당의 총재인 피고 박근혜는 2004. 7. 19.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 수락연설을 하면서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간첩이 군 사령관들과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2004. 7. 20. 기자회견을 하면서 “간첩을 위원으로 하는 등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2004. 7. 21. “간첩이 현역 장성을 불러 취조하는 나라라면 볼 장 다 본 나라 아니냐”는 발언을 하였으며, 2004. 8. 2.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노 대통령은 과거나 미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군 장성을) 취조하는 게 미래로 가는 국가냐”는 발언을 하였고, 2004. 8. 3.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고 간첩이 군 장성을 조사하는 잘못된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야당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는 발언을 하였고, 2004. 8. 5. 자민련 대표 김학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기 의문사위 활동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의문사위 활동을 존중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고 간첩이 군 장성을 조사하는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박근혜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5. 8. 11. 이 사건 소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간첩이 민주화 인사가 되고 야당 대표를 고발하고 그 다

음 순서가 뭐가 될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켜 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청구원인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 확정 후 안기부 프락치였던 백○○의 양심선언으로 위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간첩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과거의 전력일 뿐이므로 현재의 원고에 대하여 간첩이라고 언급하는 것이나, 원고가 예비역 장성을 관련법령의 절차에 의거하여 조사하였을 뿐인데 군 장성과 현역 사령관을 조사하였다고 하였으며, 조사관인 원고를 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5,000만 원, 피고 회사와 피고 김대중에 대해서는 각자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나. 원고의 특정 여부

위 각 발표를 전후 하여 중앙일보 등 다른 언론매체에서도 ‘간첩, 사노맹 출신’, ‘의문사위 조사관 K씨’ 등의 언급을 하는 발표를 한 점, 당시 원고가 의문사위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원고에게 위 국가보안법위반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는 원고의 주위 사람들로서는 이러한 사정들과 위 기초사

실에 나타난 각 표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표현들이 원고를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표현은 원고를 특정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 다. 허위의 사실 적시 여부

어떠한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적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도 적시된 내용 전체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간첩’의 통상적인 의미는 ‘적국이나 경쟁상대를 위하여 몰래 정보를 알아내어 보고하는 사람, 즉 스파이’ 또는 ‘적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들이 한 위 각 보도나 언급의 전체적인 취지나 인상은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등으로 구속되어 형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을 ‘간첩’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원고가 앞서 본 범죄사실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것이 사실이고, 그 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양심선언 등이 있다고 하여 그 범죄사실이 조작된 것이라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간첩’이라는 표현은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예비역 군사령관이나 장성을 ‘군 사령관’이라고 표현하거나, 조사관인 원고를 염두에 두고 언급하면서 의문사위 ‘위원’으로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에 불

과할 뿐 이를 들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 라. 피고 회사, 김대중의 위법성 여부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나 칼럼을 게재한 경우 그 기사나 칼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그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나 칼럼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나 칼럼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신문기사나 칼럼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으로서, 신문기사나 칼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전체의 취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제목만을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하겠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5. 7. 16.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조선일보에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전 국방 등 수십 명 조사』라는 제목 하에 “간첩죄로 4년간 복역한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조사관 K씨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출신 9명을 소환조사하고”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피고 김대중이 다음날인 2004. 7. 17.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 『‘국가의 틀’을 바꾼다?』라는 제목과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내용의 중간제목 하에 “나라의 틀 바꾸기가 간첩을 의문사위원으로 만들어 거꾸로 간첩 잡는 책임자들을 조사하게 하는 상황과 오버랩 될 때 우리는 큰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기 전인 2004. 7. 15. 중앙일보에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조사관 K씨는 1993년 일본에서 북한간첩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에 검거됐다. 당시 안기부는 K씨가 92년 여동생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간첩에게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자료를 넘겨주고 공작금 60만 엔을 받았다고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그 보도는 의문사위가 공안기관의 전향 강요를 거부하다 옥중에서 숨진 남과간첩, 빨치산 출신 3명을 민주화에 기여한 자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한 후에 이어진 사실, 위 중앙일보 보도 다음날인 2005. 7. 16. 피고 회사가 발간하는 조선일보에 위와 같은 보도를 하였지만 그 제목 아래에 『기무사령관도 5차례 소환시도 ... 불응』, 『의문사위, 기무사서만 총 150명 조사』라는 소제목을 붙였고, 본문에서는 위 “지휘관출신 9명”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예비역)”임을 명시하였으며, “송영근 국방부 기무사령관에게도 5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김대중이 발표한 위칼럼은 제목이 『‘국가의 틀’을 바꾼다?』이고 그 중간 제목이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본문 내용을 보면, 우선 첫머리에서 제목에 나타난 국가의 틀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후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국가의 틀을 바꾼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라의 틀 바꾸기가 간첩을 의문사위원으로 만들어 거꾸로 간첩 잡는 책임자들을 조사하게 하는 상황과 오버랩(overlap)될 때 우리는 큰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나라 틀 바꾸기’가 아니라 아예 ‘나라 바꾸기’이기 때문이”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후 “국격과 정체성은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기사와 칼럼의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전체 내용과 취지, 기사와 칼럼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각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그 대상이 공적기관인 의문사위의 구성과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기사와 칼럼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기사와 칼럼이 특정인, 즉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마. 피고 박근혜의 위법성 여부

정치인이 공식적인 논평이나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러한 표현은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이와 같은 정치적 주장을 대부분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치인의 정치적 언급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

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표현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그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표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일부의 표현만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박근혜가 위 기초사실에서 실시한 각 일자에 그와 같은 각 표현이 포함된 언급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근혜가 위 각 언급을 하기 전인 2004. 7.경 의문사위가 공안기관의 전향 강요를 거부하다 옥중에서 숨진 남파간첩, 빨치산 출신 3명을 민주화에 기여한 자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하자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중앙일보에서 2004. 7. 15., 조선일보에서 2004. 7. 16. 각 앞서 본 바와 같은 보도를 한 사실, 그 후 피고 박근혜가 전당대회, 기자회견, 상임운영위원회 등에서 기초사실 적시의 각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으나, 그 발언의 경위를 보면, 대표최고위원 수락연설에서 현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 외교, 사회질서 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그 내용의 하나로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간첩이 군사령관들과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나라”라는 표현을 하였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기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던 중 ‘3기 의문사위 구성 및 권한강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문사위 결정에 대해선 대부분 찬성한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보니까 1기에서 결정한 내용을 2기에서 뒤집고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고, 간첩을 위원으로 하는 등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하

는 생각이 들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자민련 대표 김학원과 면담할 때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참여하였던 간첩출신 조사관들의 사면경위와 임용배경 등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조사를 벌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뒤 3기 의문사위 구성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2기 의문사위 활동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의문사위 활동을 존중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고 간첩이 군 장성을 조사하는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고, “3기 위원회 출범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각 발언의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그 표현이 공적기관인 의문사위의 구성과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령 피고 박근혜가 위 각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부차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각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겠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

□